

無効審判請求書 作成要領

南 斗 鎔

<辨理士>

1. 請求의 趣旨

登錄 第3456號 實用新案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라는 審決
을 求함.

<註 釋>

登錄無効시키고자 하는 權利의 登錄番號와 審判費用
의 負擔者를 明示한다.

2. 請求의 理由

<註 釋>

請求의 理由에서 記載할 順序는 다음과 같다.

1. 登錄無効시키고자 하는 權利의 內容
2. 그 權利가 등록무효가 될 이유
3. 引用參證의 內容
4. 兩者의 對比
5. 結論
6. 利害關係
7. 證據方法

本件 登錄 條3456號 實用新案(以下 本件登錄 考案이
라 한다……이 登錄番號는 假想番號이다)은 1967년 12
月 20日出願, 1968年 10月 15日公告, 1969年 3月 17
日登錄된 것으로써 그 고안의 要旨는 圖面과 그 說明
書의 기재로 보아 「車輪이 有設된 機體(1)의 上面에
翼板(2)이 附着된 原板(3)을 모래供給用 “케이싱”(4)
에 收藏하여 샤프트(5)로 回轉케하고 시멘트공급用 케
이싱(8) 내에는 翼板(6)이 附着된 原板(7)을 수장하고
샤프트(9)로 회전토록하여 벨브(10)로 각 샤프트(5)
(9)를 同時に 運動케하여 機體의 內部에는 投入口(11)
(12)를 천설한 실린더(13)를 裝設하고 실린더 內部에
는 스크류(14)(14') 및 交翼板(15)을 샤프트(16)으로
축설하였으며 벨브(17)로 실린더(13)내에 注水하여서
된 시멘트 모르타르 막서”에 관한 것임을 實用新案 登
錄原簿에 의하여 이를 알수 있다.

<註 釋>

청구의 이유에서 첫번째로 기재할 것은 등록무효를
시키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인 바 권리내용의 기재는
“實用新案 登錄請求의 範圍”를 기재하면 된다(特許의
경우에는 特許請求의 범위이고 意匠의 경우에는 의장
을 表現할 物品의 名稱하고 고참의 要旨 즉 물품의 形
狀模様이나 色彩 또는 그 結合을 記述하고 商標의 경
우에는 指定商品과 그 區分, 그리고 상표의 構成을 기
재한다).

그리고 新規性의 時點을 判斷하기 위하여 出願日字
를 기술하고 無効審判請求의 除斥期間을 參酌하기 위
하여 公告日字 및 登錄日字를 기술하여야 된다.

本件登錄考案은 그 出願前 公知된 甲第3號證인 日
本國 實用新案公報 昭 31-19281號 出願番號 30-36018
考案의 名稱 : 「可搬連續 콘크리트 박사」에 의하여 신
규성은喪失한 고안인데도 등록된 것이어서 본건등록
고안은 舊 實用新案法 第2條 및 第5條 第2項의 規定에
違背되므로 同法 第18條 第1號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되어야 한다.

<註 釋>

登錄無効시키고자 하는 본건등록고안이 어떤 證據
에 의하여 無効事由에 該當되는 것인가를 引用 參證하
고 이에 해당하는 法條文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 該當條文이라 함은 特許法 第69條(舊法 第61條)
實用新案法 第19條(舊法 第18條) 意匠法 第35條(舊法
第15條) 및 商標法 第46條(舊法 第24條)를 말한다.

본건등록고안의 등록무효에 인용한 日本國 實用新案
公報 昭 31-19281號 出願番號 30-36018 考案의 명
칭 : 가반연속 콘크리트 박사(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
의 고안의 요지는 “케이싱(1)의 中央部에 부라켓드(2)
를 裝着하고 이를 車軸(3)으로 받고 케이싱(1)을 25°
內外 傾斜지게하고 케이싱(1)내에 完全 나선翼(5') 및
절결나선翼(5")을 設한 軸(5)을 從으로 장착하고 그걸

.....工業所有權審判請求 模範例 (1)

을 모우터(20)에 의하여 積動케 하고 “케이싱(1)의 위의 左側에 호퍼(6)과 그 右側에 호퍼(8)를 장착하고 호퍼(6)내에 움직일 수 있는 板(7)을設하고 호퍼(8)내에는 핸들(12)에 의하여 開口를 調節할 수 있는 벨브(10)(10')를設하고 그 벨브의 아래에는 搾件突子(13)을 突設한 搾件軸을 장착하고 교반축(14)과 나선軸(5)을 傳動的으로 連結하고 케이싱(1)의 좌측에 細水管(23)을 장착한 가반연속 콘크리트 막사의 構造”임을 알수 있다.

<註 釋>

外國에서 發行한 刊行物 또는 물품의 경우 이것이 본전 등록고안의 出願前에 우리나라에 頒布됨을 立證하는 證據의 提出이 있어야 한다.

본건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對比하진데 兩者는 모래시멘트 및 물을 自動的으로 混練하여 모르타르를 連續的으로 生產하는 막서에 관한 고안인 것이어서 양자의 목적은 동일하다.

본건등록고안은 車輪에 有設된 長方形機體(1)의 上面右側에 모래投入用 호퍼(19)가 있고 機體(1)의 中間上面에는 시멘트投入用호퍼(20) 밑에 케이싱(8)이 있고 샤프트(9)로 회전토록 마련하여 벨브(10)로 회전토록하고 기체의 내부에는 투입구(11)(12) 및 排水口를 천설한 실린더(13)를 장설하고 그 실린더내에는 스크류(14)(14')를 회전하는 샤프트(16)를 장설하였으며 기체의 前方에는 水槽(17)를 設置하여 벨브로 실린더(13)내에 注水하게 한 構造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등록고안은 모우터(21)의 始動에 의하여 샤프트(24)가 회전하고 그 회전으로 워엄기어(26)에 의하여 스크류 샤프트(16)가 回轉하는 동시에 헬리컬기어(27)(28)에 의하여 샤프트(9)가 회전함으로써 호퍼(19)(20)내에 있는 모래와 시멘트는 투입구(11)(12)에 의하여 실린더(13)내에 투입되고 그 투입된 모래와 시멘트는 회전하는 스크류(14)에 의하여 混合되며 그 混合物에 물을 벨브(17)를 열고 주입시킨다. 그러면 혼합되었던 모래와 시멘트는 물과 함께 스크류(14')에 의하여 推進되면서 完全히 混練된 모르타르가 排出口(13)로 連續排出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케이싱(1)내에 나선翼(5') 및 절결나선翼(5")을 設한 軸(5)을 從으로 장착하고 이를 모우터(20)에 의하여 積動케하고 케이싱(1)위의 좌측에 호퍼(6), 그리고 그 우측에 호퍼(8) 장착하고 나선軸(14)을 傳動的으로 連結하고 케이싱(1)의 좌측에 細水管(23)을 장치한 가반연속 콘크리트 막사의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용고안은 모우터(20)의 시동에 의하여

나선軸이 회전함으로써 호퍼(6)에 투입된 모래와 호퍼(8)에서 투입된 시멘트는 케이싱(1)내에 搬入되고 그 반입된 모래와 시멘트는 회전하는 나선翼(5') 및 절결나선翼(5")에 의하여 혼합되고 그 혼합물에 물을 흡수판(23)으로 주입시킨다. 그러면 혼합되었던 모래와 시멘트는 물과 함께 나선翼(5')과 절결나선翼(5")에 의하여 추진되면서 완전히 혼련된 모르타르가 연속배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兩者는 그 구조나 作用效果는 동일한 것이어서 양자는 同一性 있는 技術思想인 동시에 이는 公知된 技術인 것이다. 다만, 양자에 差異가 있다면 본건 등록고안은 그 權利構成中一部에 屬하는 공지의 호퍼(19)(20)밑에 翼板(2)을 가진 原板을 케이싱(4)(8)에 각각 수장하였으나 인용고안에서는 공지인 호퍼(6)안에 움직일 수 있는 板(7)을 수장하고 공인인 호퍼(8)밑에 핸들(12)에 의하여 調節할 수 있는 벨브(10)(10')를設하고 그 아래에 搾件突子를 수장한 정도이나 이는 이 고안에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지식을 가지는者は 인용고안으로부터 본건등록고안을 용이하게 推考實施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인정된다.

<註 釋>

본건등록고안과 인용고안에 대하여 양자의 고안의 목적, 구조 작용 효과를 對比하여 양자의 기술사상에 대한 동일성 내지 進歩性을 誘導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건등록고안은 舊實用新案法 第2條 및 第5條 第2項의 규정에 違背되어 신규성이 없는 고안이 등록된 것으로 歸結되므로 同法 第18條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를 免할 수 없을 것으로 주문과 같은 심결을 下하는 바이다.

<註 釋>

본건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한 결과를 該當 法條文에 適用시켜 結論지어야 한다.

審判請求人은 본건등록고안의 물품과 같은 同種品을 생산하는 자로서 본건등록고안의 存續으로 因하여 권리의 抵抗을 받을 念慮가 있어 兹以 本件을 請求하는 바이다.

<註 釋>

- 無効審判은 利害關係者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것을 補明하여야 한다.
- 이의 소명을 위하여 同種品을 生産함을 立證하는 “事業者納稅番號證” 權利者로부터 權利侵害하였다는 내용의 警告狀을 받았을 경우에 그 경고장 또는 法院에 권리침해에 관한 訴訟이 提起되었을 경우에 訴訟繫留證明등이다.

工業所有權審判請求 模範例 (1).....

3. 위와같이 이해관계에 관한 증거의 제출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審判部 合議部에서 心證이 形成될 경우에는 本件審理를 省略하고 심판청구를 不適法한 것으로 보고 却下한다(特許法 第105條 第127條……舊法 第97條 第119條, 實用新案法 第29條……舊法 第28條, 意匠法 第53條……舊法 第28條 商標法 第5條……舊法 第26條).

3. 證據方法

甲第1號證：登錄 第3456號 實用新案의 登錄原簿의 謄本

<註 釋>

當事者表示에 있어 實用新案權者의 표시와 原簿上의 표시가 一致됨을 立證하기 위한 것이나 이를 省略할 수도 있다. 생략하였을 경우에 合議體에서는 실용신안권자의 표시의妥當性與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職權으로 조사하게 된다.

甲第2號證：登錄 第3456號 實用新案의 公報寫本

<註 釋>

본건등록실용신안의 權利內容을 明白히 하여 合議部에서의 審理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甲第3號證：日本國 實用新案公報(昭 31—19281號 出願番號 30—36108 考案의 명칭：가반연속콘크리트)의 사본

<註 釋>

本件登録考案의 登錄無効에 인용한 引用考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합의부의 심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甲第4號證：甲第3號證의 頒布證明書

<註 釋>

본건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동일하더라도 인용고안의 刊行物이 本件登録考案의 出願前에 우리나라에 頒布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限 이는 證據力이 없으므로 인용고안의 간행물이 採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頒布證明이 필요하다(例로서 日本公報의 경우 特許廳資料課에서 頒布證明을 取扱함).

甲第5號證：심판청구인의 事業者納稅番號證 寫本

<註 釋>

當事者間의 이해관계를 疏明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밖에도 이해관계가 소명될수 있는 증거라면 된다.

<註 釋>

審判請求書 書式은 實用新案法施行規則 第3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施行規則 第53條의 규정에 의한 第23號 書式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該當代理人欄에 記入한다.

審判事件의 표시에서 등록번호가 登錄原簿上의 번호와 동일하도록 하고 이에 誤記無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例 示>

심판청구서				
심판 청구인	성명	이 갑돌	주민등록 번호	300817- 3011223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동 100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피심판 청구인	성명	최병돌	주민등록 번호	281109- 28222334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현동 200		
심판 사건의 표시		등록 제3456호 실용신안의 등록무 효 심판청구사건		
고안의 명칭		시멘트 모르타르 미사		
청구의 취지		별지 사용		
청구의 이유		별지 사용		
증거방법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첨부서류목록				
구 실용신안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1978. 5. 18.				
청구인(또는 대리인) 이 갑돌 ①				
특허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청구서 부분 1통				
2. 위임장 1통(위임이 있었을 경우)				

三大秩序確立하여 文化國民矜持찾자 !